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8
----------	-----

2011년 6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4월 11일, 김용석(서초4) 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2011년 4월 12일
- 다. 상정일자: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 6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자: 김용석(서초4)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원장의 선출방법, 당연직 위원의 자격과 임기, 불분명한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대한구성 인원 및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2조제1항).
- 서울시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수정함(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 것은 대다수 위원회의 일반적인 선출 방식을 명문화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판단됨.

또한 제4조제3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에서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변경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안정성을 우선한 개정으로 사료됨.

○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을 “위원은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변경한 것은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관련 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또한 제4항에서 다른 위원과 임기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도 마땅한 조치로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해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을 추가한 것은 위원회의 실제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동 개정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수정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법률 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기타 동 개정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의 수정 사항은 1990년 5월 29일 일부개정 이후 오래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구를 정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서울특별시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 4.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임연구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전임연구원은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계장”을 “담당 팀장”으로, “연구원”을 “전임연구원”으로,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u></p> <p><b>제1조(목적)</b> …… <u>서울특별시 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            ……            ……</p>
<p><b>제2조(구성 및 임기)</b></p> <p>① (생략)</p> <p>②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③ <u>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과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u></p> <p>④ <u>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u></p>	<p><b>제2조(구성 및 임기)</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u></p> <p>③ <u>위원은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④ <u>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u></p>
<p><b>제3조(심의사항)</b> ① <u>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생략)</p> <p>2. <u>시사별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u></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b>제3조(심의사항)</b>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u>서울문화의 계승발전</u></p> <p>3. (현행과 같음)</p> <p>4. <u>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u></p>
<p><b>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b> ① <u>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u></p> <p>② (생략)</p> <p>③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b>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b>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u> ……</p>
<p><b>제5조(연구원 및 보조원)</b> ① <u>위원회에 시사편찬을 위한</u></p>	<p><b>제5조(전임연구원)</b> ① <u>위원회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u></p>

현행	개정안
<p>사료의 수집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연구원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원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p>	<p>데 필요한 전임연구원을 둔다.</p> <p>② 제1항의 전임연구원은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p>
<p><b>제6조(간사 등) ① (생략)</b></p> <p>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계장이 되며, 연구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b>제7조(소위원회) ①</b>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b>제6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 담당 팀장이 되며, 연구간사는 전임연구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7조(소위원회) ①</b>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